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

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이수진·송옥주·박해철

민형배 · 강준현 · 문대림

신정훈 • 복기왕 • 전용기

김승원·박 정·허 영

노종면 · 김문수 · 문진석

한민수 · 송재봉 · 최민희

이원택 • 백승아 • 서영교

이병진 · 황정아 · 문금주

정일영・김 윤・김남근

허종식 · 조인철 · 염태영

김태년 · 권향엽 · 장종태

안호영 • 박홍근 • 박홍배

정진욱 • 이상식 • 김 현

이재강 • 부승찬 의원

(41 %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'간병'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

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.

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에 따라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,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,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.

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'간병'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,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 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 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간병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1조(요양급여) ① 가입자와 피	제41조(요양급여) ①		
부양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			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			
급여를 실시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<u>8. 간병</u>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